

2009년 복지정책평가 컨설팅 보고서

- 경상북도 군위군 -

김승권 · 김태완 · 박세경 · 신현웅 · 윤상용 · 이윤경 · 정희선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H E A L T H
A N D S O C I A L
A F F A I R S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왔으며, 많은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민·관 복지협력기구의 구성, 지역복지계획수립의 의무화 등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복지분야의 통합전산망 구축도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획 및 추진 역량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역특성을 최대수준에서 고려한 복지정책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증대시키는 복지서비스 분야의 많은 업무가 지방이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의 재정한계로 서비스 확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과에 초점을 둔 사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에 대한 평가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즉, 2006~2008년 기간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복지정책을 직접 평가하였다. 2009년도에는 정부의 평가 업무 조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통합되어 실시되었다.

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16개 시도 합동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2006~2008년

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컨설팅 보고서는 복지정책의 사후평가에 머물지 않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기 위함이다. 특히, 컨설팅 필요 지자체의 평가결과 심층 분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은 평가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당 원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에 대한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사회복지계의 학자,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0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요 약	1
제1장 일반현황	7
제1절 인구특성	7
1. 인구 및 가구현황	7
2. 인구구조	8
제2절 복지조직 및 시설	10
1. 복지조직	10
2. 복지시설	11
제2장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15
제1절 전체 및 영역별 점수	15
제2절 각 영역의 지표 점수	16
제3절 영역별 세부지표 평가 점수 및 통계	17
1. 복지총괄	17
2. 노인복지	24
3. 아동·청소년복지	27
4. 보육	32
5. 장애인복지	35
6. 지역사회서비스	43
7. 기초생활보장	48
8. 자활영역	52
9. 의료급여	55

제3장 복지정책 발전방안	61
제1절 전반적 방향	61
제2절 복지영역별 방안	62
1. 복지총괄	62
2. 노인복지	64
3. 아동·청소년복지	65
4. 보육	66
5. 장애인복지	67
6. 지역사회서비스	68
7. 기초생활보장	70
8. 자활영역	70
9. 의료급여	71

표 목차

〈표 1- 1〉 인구현황	7
〈표 1- 2〉 가구현황	8
〈표 1- 3〉 연령별 인구	8
〈표 1- 4〉 부양비 및 노년화지수	9
〈표 1- 5〉 대상별 인구	10
〈표 1- 6〉 복지시설현황	11
〈표 1- 7〉 복지시설 구분	12
〈표 2- 1〉 전국, 해당그룹, 군위군 영역별 점수	16
〈표 2- 2〉 각 영역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17
〈표 2- 3〉 복지총괄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18
〈표 2- 4〉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19
〈표 2- 5〉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19
〈표 2- 6〉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20
〈표 2- 7〉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21
〈표 2- 8〉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22
〈표 2- 9〉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23
〈표 2-10〉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24
〈표 2-11〉 노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24
〈표 2-1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25
〈표 2-13〉 노인일자리 제공률	26
〈표 2-14〉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26
〈표 2-15〉 아동·청소년복지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27
〈표 2-16〉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28

〈표 2-17〉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29
〈표 2-18〉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29
〈표 2-19〉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30
〈표 2-20〉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31
〈표 2-21〉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	32
〈표 2-22〉	보육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32
〈표 2-23〉	보육수요 충족률	33
〈표 2-2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34
〈표 2-25〉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34
〈표 2-26〉	취약보육 실시율	35
〈표 2-27〉	장애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36
〈표 2-2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37
〈표 2-29〉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37
〈표 2-3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38
〈표 2-31〉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39
〈표 2-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39
〈표 2-33〉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40
〈표 2-34〉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41
〈표 2-35〉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41
〈표 2-36〉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42
〈표 2-37〉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42
〈표 2-38〉	지역사회서비스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44
〈표 2-3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44
〈표 2-4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45

〈표 2-4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45
〈표 2-42〉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46
〈표 2-43〉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46
〈표 2-44〉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47
〈표 2-45〉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48
〈표 2-46〉	기초생활보장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49
〈표 2-47〉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49
〈표 2-48〉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 실적	50
〈표 2-49〉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51
〈표 2-50〉	급여조정 실적	51
〈표 2-51〉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52
〈표 2-52〉	자활영역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53
〈표 2-53〉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53
〈표 2-54〉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54
〈표 2-55〉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54
〈표 2-56〉	의료급여 자격 처리의 신속도	55
〈표 2-57〉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56
〈표 2-58〉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56
〈표 2-59〉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57
〈표 2-60〉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58

그림 목차

〔그림 1-1〕	경상북도 군위군 복지관련 조직 현황	11
----------	---------------------	----

요약

제1 장 일반현황

□ 인구특성

- 군위군의 2008년 말 인구수는 25,712명(외국인 포함)이며, 성별 구성비는 남성 50.59%, 여성 49.41%임.
 - 가구수는 11,625가구, 평균가구원수는 2.21명임.
-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60.92%, 노년인구는 30.56%, 유년인구는 8.52%임.
 - 유년부양비는 13.98%, 노년부양비는 50.17%로 총부양비는 64.15%이며, 노년화지수는 358.77%임.
- 기초생활수급자는 1,512명, 등록장애인수는 1,970명, 다문화가족은 77가구임.

□ 복지조직 및 시설

- 군위군의 복지영역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민원봉사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주민생활지원, 통합조사관리, 서비스연계, 가정복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포함하여 총 15명 인력이 업무를 담당함.
 - 민원봉사과는 여성청소년 업무를 지원하며, 민원봉사과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복지시설은 총 16개소로 생활시설은 5개소, 이용시설은 11개소임.

제2장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 전체 및 영역별 점수

- 군위군의 복지정책 전체 평가점수는 2977점 만점에 1,799.94점으로 100점 환산시 60.46점임.
-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시 전국 평균 67.73점보다 7.27점 낮음.
 - 전국 최고점수 78.68점보다 18.22점 낮은 반면, 전국 최저점수 57.93점보다 2.54점 높음.
-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시 해당그룹 평균 67.76점 보다 7.30점 낮음.
 - 해당그룹 최고점수 72.56점보다 12.10점 낮으며, 해당그룹 최저점수인 59.51점보다 0.9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군위군이 해당그룹 내에서 복지정책 전체 평가 점수가 매우 낮은 지역임을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군위군의 영역별 점수를 전국 평균과 해당그룹 평균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 평균과 영역별 점수를 비교하면 「장애인」, 「의료급여」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 특히, 「복지총괄」, 「노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은 전국 평균과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내고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해당그룹 평균과 각 영역별 점수를 비교하면 「의료급여」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 특히, 「복지총괄」, 「노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내고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함.

□ 각 영역의 지표 점수

- 복지 총괄의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노인 복지의 경우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는 다소 높은 수준임.
- 보육 영역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음.
- 장애인 영역의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와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영역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 영역의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3장 복지정책 발전방안

- 전반적으로 군위군은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의 많은 제한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복지부서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열정이 매우 큼.
 - 군위군은 농어촌의 소규모 지자체로 평가지표가 대도시 중심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 그룹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또한 복지재정의 확충과 시설인프라 구축은 다소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군위군의 2008년도 평가결과가 부진한 원인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 부정사례발생에 따른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2008년 4.13일부로 군 본청과 읍면 직원간 100%상호 전보조치로 인해 업무 인계인수와 업무적응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평가 기준연도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점이 개선되었으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이미 확충 또는 개선된 점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발전방안에 완벽히 반영되지는 않은 한계를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시하는 발전방안은 향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군위군의 복지정책 평가점수가 낮은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영역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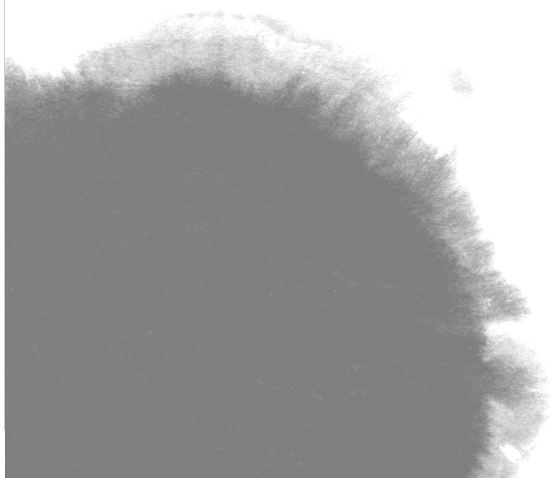
○ 「복지총괄」,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보육」,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자활」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많은 노력이 필요함.

○ 「복지총괄」,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은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각 영역별 평가 내용을 보면 기반 시설 확충도가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추진되고 있는 많은 요양시설이 완공되었거나 현재 군에서 공사 중인 장기요양 시설 등 지역사회서비스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01

일반현황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인구특성

1. 인구 및 가구현황

- 군위군의 2008년 말 인구수는 25,712명(외국인 포함)으로서 전국 인구의 0.05%, 경상북도 인구의 0.98%를 차지함.
- 성별 구성비는 남성 50.59%, 여성 49.41%로 남성 인구 1.18%pt 많음.
- 외국인은 403명으로, 군위군 전체 인구의 1.57%이었으며, 전국 외국인의 0.17%, 경상북도 외국인의 3.12% 수준을 보임.

〈표 1-1〉 인구현황

(단위: 명)

구분	성별			국적 ³⁾		
	계	남	여	계	한국인	외국인
전국 ¹⁾	48,606,787	24,415,883	24,190,904	48,606,787	47,041,434	237,517
경상북도 ¹⁾	2,620,434	1,317,909	1,302,525	2,620,434	2,594,719	12,922
군위군 ²⁾	25,712	13,008	12,704	25,712	23,309	403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8; 2) 군위군 내부자료, 2009; 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 군위군의 가구수는 11,625가구로, 전국 가구의 0.07%, 경상북도 가구의 1.21% 수준임.
- 군위군의 평균 가구원수는 2.21명으로, 전국의 평균 가구원수(2.92명)와 경상북도의 평균 가구원수(2.73명)보다 다소 적음.

〈표 1-2〉 가구현황

(단위: 세대, 명)

구분	총 인구수	가구수 ³⁾	평균 가구원수
전국 ¹⁾	48,606,787	16,673,162	2.92
경상북도 ¹⁾	2,620,434	960,785	2.73
군위군 ²⁾	25,712	11,625	2.21

주: 1) 평균 가구원수=총 인구수/가구수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2008.; 2) 군위군 내부자료, 2009; 통계청, 3) 「가구구성별 장래추계가구」, 2008.

2. 인구구조

□ 군위군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노년 인구(65세 이상), 유년 인구(0~14세)로 나타남.

○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60.92%이며, 노년인구는 30.56%, 유년인구는 8.52%임.

— 이를 전국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와 비교하면, 군위군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11.36%pt, 유년인구 비율보다 8.88%pt 낮은 반면, 노년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0.24%pt 높음.

— 경상북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와 비교하면, 군위군은 경상북도 생산가능인구보다 7.47%pt, 유년인구보다 7.49%pt 낮은 반면, 노년인구 비율은 경상북도 평균보다 14.96%pt 높음.

〈표 1-3〉 연령별 인구

(단위: 명)

구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전국 ¹⁾	48,606,787	8,458,098	35,132,663	5,016,026
경상북도 ¹⁾	2,620,434	419,499	1,792,199	408,736
군위군 ²⁾	25,309	2,156	15,418	7,735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2008; 2) 군위군 내부자료, 2009.

□ 군위군의 총부양비는 64.15%로 전국 평균(38.35%)보다 25.8%pt, 경상북도 평균(46.21%)보다 17.94%pt 높음.

○ 유년부양비는 13.98%로, 전국 평균(24.07%)보다 10.09%pt, 경상북도 평균(23.41%)보다 9.43%pt 낮음.

○ 노년부양비는 50.17%로, 전국 평균(14.28%)보다 35.89%, 경상북도 평균(22.81%)보다 27.36%pt 높음.

□ 노년화지수는 358.77%로, 전국 평균(59.30%)보다 299.47%pt, 경상북도 평균(97.43%)보다 261.34%pt 높음.

○ 이는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보다 노인의 부양부담이 훨씬 크며, 군위군 인구 중 노년층이 많음을 보여줌.

〈표 1-4〉 부양비 및 노년화지수

(단위: %)

구분	부양비			노년화지수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전국 ¹⁾	24.07	14.28	38.35	59.30
경상북도 ¹⁾	23.41	22.81	46.21	97.43
군위군 ²⁾	13.98	50.17	64.15	358.77

주: 유년부양비=유년층(0~14세 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

노년부양비=노년층(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100

노년화지수=노년층(65세 이상 인구)/유년층(0~14세 인구)×100

자료: 1) 통계청, 「연령별 장래추계인구」, 2008; 2) 군위군 내부자료, 2009.

□ 군위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512명, 등록장애인수는 1,970명, 다문화가족은 77가구임.

○ 기초생활수급자는 군위군 전체 인구의 5.88%로,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의 0.1%, 경상북도 기초생활수급자의 1.21%를 차지함.

○ 등록장애인수는 군위군 전체 인구의 7.66%로, 전국 등록장애인의 0.09%, 경상북도 등록장애인의 1.38%를 차지함.

○ 다문화가족은 군위군의 전체 가구 중 0.66%로, 전국 다문화가족의 0.06%,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의 1.08%를 차지함.

〈표 1-5〉 대상별 인구

(단위: 명, 가구)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록수	다문화가족수
전국 ¹⁾	1,529,939	2,104,889	131,702
경상북도 ¹⁾	124,538	143,009	7,103
군위군 ²⁾	1,512	1,970	77

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8;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현황』, 2007; 김승권 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 군위군 내부자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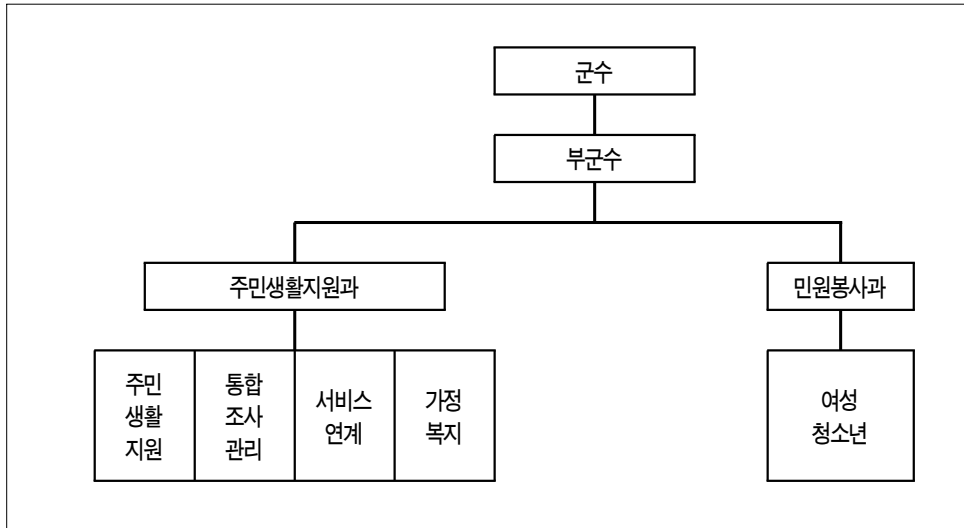
제2절 복지조직 및 시설

1. 복지조직

□ 군위군의 복지영역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민원봉사에서 담당하고 있음.

-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주민생활지원, 통합조사관리, 서비스연계, 가정복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포함하여 총 15명 인력이 업무를 담당함.
 - －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복지시설 일반관리, 복지대상자관리,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지역사회서비스연계 및 발굴,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의료급여 등을 지원함.
- 민원봉사과는 여성청소년 업무를 지원하며, 민원봉사과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세부적으로는 여성 및 청소년 정책, 아동복지, 한부모가정 생활안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다문화가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그림 1-1] 경상북도 군위군 복지관련 조직 현황



자료: 군위군 내부자료, 2010.

2. 복지시설

- 군위군의 복지시설은 총 16개소로 생활시설은 5개소, 이용시설은 11개소임.
- 생활시설의 이용자수는 128명으로 66.67%이용률을 보임.
- 이용시설의 이용자수는 2,601명으로 군위군 전체 인구의 10.12%가 이용하고 있음.

〈표 1-6〉 복지시설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정원수	이용자수
생활시설	5	192	128
이용시설	11	451	2,601

자료: 군위군 내부자료, 2010.

□ 복지시설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인복지시설은 총 6개소로 실버양로원 1개소, 요양원 3개소, 주간보호시설 1개소, 방문요양시설 1개소로 구성됨.
-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2개소로 운영됨.
- 보육시설은 총 4개소로 법인 2개소, 민간 2개소로 구분됨.
-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개소로 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로 구성됨.
- 저소득층복지시설은 지역자활센터 1개소로 운영됨
- 기타로는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1개소로 구성됨.
- 종합사회복지관은 미설치 된 것으로 파악됨.

〈표 1-7〉 복지시설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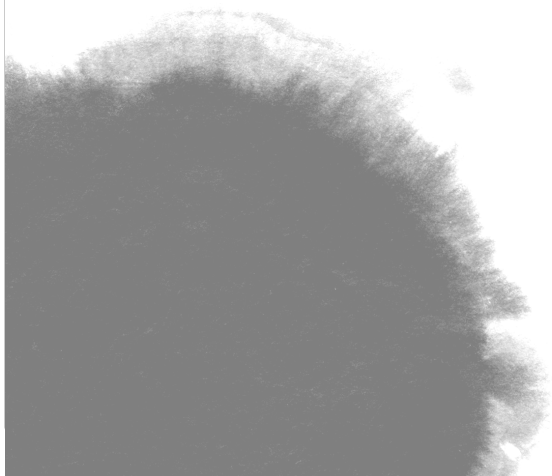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정원수	이용자수	시설구분
종합사회복지관	-	-	-	-
노인복지시설	6	252	190	실버양로원(1), 요양원(3), 주간보호시설(1), 방문요양시설(1)
아동복지시설	2	48	48	지역아동센터(2)
보육시설	4	314	198	법인(2), 민간(2)
장애인복지시설	2	29	222	장애인심부름센터(1), 장애인복지시설(1)
저소득층복지시설	1	-	40	지역자활센터(1)
기타	1	-	2,031	자원봉사센터(1)

자료: 군위군 내부자료, 2010.

02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제2장 2009년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제1절 전체 및 영역별 점수

□ 군위군의 복지정책 전체 평가점수는 2977점 만점에 1,799.94점으로 100점 환산시 60.46점임.

-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시 전국 평균 67.73점보다 7.27점 낮음.
 - － 전국 최고점수 78.68점보다 18.22점 낮은 반면, 전국 최저점수 57.93점보다 2.54점 높음.
- 전체 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시 해당그룹 평균 67.76점 보다 7.30점 낮음.
 - － 해당그룹 최고점수 72.56점보다 12.10점 낮으며, 해당그룹 최저점수인 59.51점보다 0.9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군위군이 해당그룹 내에서 복지정책 전체 평가 점수가 매우 낮은 지역임을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군위군의 영역별 점수를 전국 평균과 해당그룹 평균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전국 평균과 영역별 점수를 비교하면 「장애인」, 「의료급여」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 － 특히, 「복지총괄」, 「노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은 전국 평균과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내고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함.
- 해당그룹 평균과 각 영역별 점수를 비교하면 「의료급여」영역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모두 낮게 나타남

- 특히, 「복지총괄」, 「노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내고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함.

〈표 2-1〉 전국, 해당그룹, 군위군 영역별 점수

(단위: 점)

영역(만점)	전국			해당그룹			군위군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복지총괄(246점)	226.32	176.92	132.84	199.26	170.66	135.30	142.68
노인복지(406점)	406.00	284.13	162.40	386.20	296.33	202.30	203.35
아동·청소년(359점)	281.15	211.95	152.90	254.72	209.58	165.92	202.64
보육(211점)	198.34	138.72	90.73	166.69	143.35	97.06	135.04
장애인(545점)	460.54	355.10	227.06	421.11	382.29	325.80	364.10
지역사회서비스(380점)	344.11	247.05	161.92	296.16	236.75	180.44	180.44
기초생활보장(563점)	505.04	413.18	334.49	471.92	395.65	360.98	377.54
자활(122점)	122.00	87.00	48.80	112.24	80.60	48.80	85.40
의료급여(145점)	131.95	102.23	71.05	131.95	102.04	71.05	108.75
계(2,977점 만점)	2,342.27	2,016.29	1,724.46	2,160.01	2,017.25	1,771.70	1,799.94

주: 영역별 가중치가 부여된 점수이며, 평가점수 총점은 2,977점임.

제2절 각 영역의 지표 점수

□ 군위군의 각 영역별 지표 점수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복지 총괄의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노인 복지의 경우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는 다소 높은 수준임.
- 보육 영역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음.
- 장애인 영역의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와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영역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 영역의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각 영역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단위: 점)

영역	지표명	만점	전국 평균	군위군
복지총괄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확충도	100	71.92	58
노인복지	독거노인 생활관리 파견사업의 성과	100	64.31	55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과	100	76.98	55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100	68.19	40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	100	64.66	55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용도	100	53.00	58
보육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100	65.75	64
장애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100	56.32	40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100	71.62	85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사업 성과	100	66.96	73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100	62.41	40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100	61.56	48
	사회서비스 업무추진의 적절성	100	71.24	55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100	79.64	70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100	67.49	64
자활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100	71.31	70
의료급여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100	70.50	75

제3절 영역별 세부지표 평가 점수 및 통계

1. 복지총괄

-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는 100점 만점에 58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봉사활동 시간’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음.

— 특히,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과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20점 만점의 기본점수를 보여 많은 노력이 필요함.

〈표 2-3〉 복지총괄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단위: 점)		
		만점	전국 평균	군위군
지 자 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15	14.68	15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10	7.17	6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20	12.95	8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	10	6.21	5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10	6.21	5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20	13.78	8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15	10.92	11
	계	100	71.92	58

가.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

□ 군위군의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 수는 13.43명으로 전국, 농어촌, 해당 그룹의 평균보다 훨씬 낮음.

- 이용시설종사자수는 14명으로 전국 평균의 7.85%, 농어촌의 24.22%, 해당그룹의 30.15%를 보임.
- 생활시설 종사자수는 20명으로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매우 적은 인원임.
- 기타종사자수는 0명으로 전국 평균과 최대 10명 이상의 차이를 보임.
- 전반적으로 민간복지 종사자 수가 적어, 해당그룹 평균만큼 민간복지 종사자 수를 확충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표 2-4〉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단위: 명)

지역	전체인구수	이용시설종사자수	생활시설 종사자수	기타종사자수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전국	213,536.06	178.37	205.28	10.50	23.90
농어촌	52,282.77	57.80	100.17	5.85	31.12
해당그룹	36,327.75	46.44	61.19	1.00	31.11
군위군	25,309.00	14.00	20.00	0.00	13.4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민간복지 종사자수/인구수)×10,000
- 민간복지종사자: 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복지관련 단체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포함(단, 비인가, 임의단체는 제외. 반드시 등록된 단체에 한함)
 -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복지 이용 및 생활시설에 한함(이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이나 단체는 제외)
 - 민간복지종사자 명단은 각 시설로부터 2008.12월분 급여대장 사본을 받아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되 급여대상 사본은 2009년도 합동평가단의 시도별 평가일정에 맞추어 각 시도로 제출할 것
 - ※ 단, 급여대장중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제출
 - 인구수: 2008년 말 기준의 전체 시·군·구 인구수를 의미함.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파악, 합산하여 기재토록 함.

□ 사회복지지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은 66.67%로 전국 평균 69.57%, 농어촌 평균 67.99%, 해당그룹 평균 69.55%보다 낮음.

○ 전체 사회복지기관 9개소 중 6개소가 새ول행정시스템 정보 연계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2-5〉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단위: 개, %)

지역	전체 사회복지 기관수	새ول행정시스템 정보 연계시스템 사용 기관수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사용률
전국	51.38	35.31	69.57
농어촌	23.28	15.44	67.99
해당그룹	17.63	12.06	69.55
군위군	9.00	6.00	66.6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연계시스템 사용률: (새울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 사회복지기관수/사회복지기관수)×100
- 새울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 사회복지기관수: 관내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시·군·구 새울행정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사용기관 수를 의미함.
 - 사회복지기관 수: 사회복지기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를 제외한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이 포함됨.(단, 조건부 및 미신고 시설은 제외함)
 -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타 지자체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제외되며, 타 지역에 소재하여도 본청에서 직접 운영 및 지원하는 시설은 포함됨

□ 군위군의 사회복지재정 비율은 9.00%로 전국 평균 21.42%, 해당그룹 평균 10.47%보다 낮음.

○ 지자체 전체 예산은 해당그룹 평균의 79.58% 수준이나, 사회복지재정은 해당그룹 평균의 66.65%수준으로 나타나 군위군의 예산이 해당그룹 평균보다 사회복지에 덜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음.

— 지자체 전체 예산은 195,436,000천원으로, 전국(342,804,314천원), 농어촌(274,865,958천원) 및 해당그룹(245,590,681천원)의 평균보다 적음.

— 사회복지재정은 17,606,389천원으로 전국(70,036,878천원), 농어촌(34,515,804천원) 및 해당그룹(26,415,686천원)의 평균보다 적음.

〈표 2-6〉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단위: 천원, %)

지역	지자체 전체 예산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재정 비율
전국	342,804,314	70,036,878	21.42
농어촌	274,865,958	34,515,804	12.42
해당그룹	245,590,681	26,415,686	10.47
군위군	195,436,000	17,606,389	9.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全國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전체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사회보장비/일반회계 총액)×100
- 사회보장비: 관 2300번 일반회계의 사회보장비 중심으로 작성
 - ①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결산 때까지 지출한 경우는 전년도 사업비에 합산
 - ② 지자체 특성상(일반회계) 부문에 시 혹은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분모인(일반회계) 부문에 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재정(사회보장비)에도 같은 보조금(결산액) 액수를 포함하도록 함(예, 서울시의 보조금)
 - ③ 2008년도에 긴급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한함
 - * 일반회계에서 재해복구와 관련된 대규모 비용은 제외
 - 시군구 전체 예산: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액(예산 집행액, 지출총액)으로 산정
 - * 특별회계는 제외

□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은 $28.65m^2$ 로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최소 $66m^2$ 에서 최대 $113m^2$ 까지 차이를 보임.

○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수는 0.24개소로 전국 평균(0.14개소) 및 해당그룹 평균(0.30개소)보다 인구대비 사회복지 이용시설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그룹 평균(0.30개소)이 군위군의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수 (0.24개소)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시설 면적이 좁아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은 군위군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표 2-7〉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단위: 명, 개, m^2)

지역	인구수	사회복지 이용시설수	이용시설 면적의 합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전국	213,536.06	29.63	16,475.04	94.93
농어촌	52,282.77	13.23	6,036.21	123.92
해당그룹	36,327.75	11.00	4,768.36	142.17
군위군	25,309.00	6.00	725.00	28.6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全國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면적/인구수)×1,000
- 사회복지 이용시설 총 면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이용시설(생활시설 제외)에 대한 신고 설치 면적, 시군구 관내 모든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설치 면적의 합
· 2008년 12말 현재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 한함.
- 인구수: 2008년 말 기준의 전체 시군구 인구수를 의미함.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파악, 합산하여 기재토록 함.

□ 군위군의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은 4점으로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과 비슷한 수준임.

○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복지계획을 6월 이전에 수립하고,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간사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표 2-8〉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단위: 명, 개, %, 점)

지역	풀타임 간사 수 ¹⁾	파트타임 간사 수 ¹⁾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기 ¹⁾			지역사회협의체 심의이행여부 ¹⁾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6월 이전	11월 이전	11월 이후		
전국	73	4	23	103	89	207	5.22
농어촌	16	0	5	40	31	74	4.89
해당그룹	2	0	0	10	5	15	4.75
군위군 ²⁾	0	0	-	-	1	1	4.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농어촌 81개 지자체, 해당그룹 16개 지자체의 총 합계임; 2)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시기: 시도지사에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수립: 1, 미수립: 0), 지역사회협의체 심의이행 여부: 이행(1), 불이행(0); 3)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파트타임 간사수×0.5+풀타임 간사수)×3+지역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기+지역복지협의체 심의이행 여부
- * 간사: 협의체 소속의 민간 유급간사만을 의미
- 민간 유급 간사: 지역복지협의체 소속된 민간 신분의 유급 직원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를 풀타임으로 봄
 - 주 20~39시간 근무 기준 급여자는 파트타임으로 봄
 - 주 20시간 이하 근무조건의 민간 간사의 경우에는 유급 간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단, 주 20시간 근무자 2인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풀타임 간사 1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지역복지계획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여부
 - 평가대상 연도의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2008년 6월, 11월말, 11월말 이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 (6월(3점), 11월(2점), 11월 이후(1점))
 - 지역복지협의체 심의 이행 여부
 - 연차별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역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쳤는지를 의미함
 - 심의 이행이란, 시행계획이 내부 결재 과정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최소한 지역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의 1차례 이상 대면회의(서면회의는 해당 안됨)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는지를 의미. 이행(3점), 불이행(0점)

□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1건으로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 평균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 특화사업 건수는 전국 및 해당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8건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화사업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관련 사업의 증설이 필요함.

○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0건으로 분석됨.

— 지역사회내의 복지증진, 인력강화, 민간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구의 노력이 필요함.

〈표 2-9〉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단위: 건)

지역	특화사업 건수	민관협력사업 건수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전국	9.08	0.99	9.94
농어촌	7.94	0.30	8.23
해당그룹	9.31	0.19	9.50
군위군	1.00	0.00	1.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2008년도 특화사업 건수+2008년도 민관협력사업 건수
〈특화사업기준〉
- 특화사업은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관련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획하는 사업을 의미함. 즉, 특수시책, 특수사업, 구상사업, 비전사업 등으로 일컬어지며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복지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사업을 의미함.
 - 국비 및 시·도의 예산지원 사업은 제외되고, 시·군·구 자체 사업을 의미하며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모두 해당됨.
 - 행사성 사업, 일회성 사업 및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의 지원 사업 등은 제외됨.
 - 사회복지기념일(사회복지의 날, 여성의 날, 어린이날,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 등) 중심의 행사성 사업, 연말 등에 일회성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은 제외함.
 - 관변단체를 지원 또는 후원하는 사업은 제외함.
 - 경상예산사업 중에서 국가유공자 추가수당 등 사회보장성사업은 해당되나 복지관련 행사지원, 건물임차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민관협력사업 기준〉
- 민관협력사업이란 시군구가 지역사회내의 복지증진, 인력강화, 민간자원 개발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 시설, 학교, 기업, 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시군구 자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모두 포함.
 -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서가 마련되어 있고 단체장의 승인 하에 공식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말함.
 - 민간복지기관 범위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시립, 구립)과 단체(협의체, 위원회 등) 등은 제외함.
 - 시군구 사회보장복지부서 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공동 참여하는 연찬회, 세미나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35.03시간으로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자원봉사활동 등록자수는 150명으로 전국, 농어촌의 평균보다는 낮은 반면,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높음.
- 봉사활동 총시간은 5,254시간으로 전국, 농어촌의 평균보다는 낮은 반면,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남.

〈표 2-10〉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단위: 명, 시간)

지역	자원봉사활동 등록자수			봉사활동 총시간			등록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등록자 (VMS)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등록자	계	한국사회복지 협의회등록자(VMS)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등록자	계	
전국	1,144.43	535.67	1,680.10	60,833.59	3,148.34	63,981.93	46.46
농어촌	279.35	22.68	302.02	12,998.51	836.46	13,834.96	45.79
해당그룹	119.69	17.69	137.38	4,621.56	553.56	5,175.13	39.90
군위군	132.00	18.00	150.00	4,892.00	362.00	5,254.00	35.0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등록자원봉사자 총 활동시간/등록자원 봉사자수(VMS+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등록자원봉사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VMS시스템에 가입된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수(VMS)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총합으로 2008년 1년간 총 16시간 이상 봉사활동 유경험자 임
 - 사회복지시설(생활 및 이용시설)에서 자체 등록 및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도 포함되지 않음(이중등록)

2. 노인복지

□ 군위군의 노인복지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임.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특히, ‘장기요양시설 확충률’은 100점 만점에서 기본 점수를 보여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2-11〉 노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군위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100	64.31	55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노인일자리 제공률(공공분야+민간분야)	100	76.98	55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100	68.19	40

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 군위군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은 전국 평균, 농어촌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은 0.59%로 전국 평균(0.74%)보다 0.15%pt, 농어촌 평균(0.91%)보다 0.325pt, 해당그룹 평균(0.75%)보다 0.16%pt 낮음.

〈표 2-12〉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단위: 건, 명, %)

지역	안전확인 횟수	생활교육 인원	서비스연계인원	보건복지가족부 배정인원	사업대상자 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전국	65,275.58	8,873.53	9,279.85	22.49	494.72	0.74
농어촌	55,889.96	9,632.89	9,870.99	19.12	420.72	0.91
해당그룹	50,821.50	8,290.25	5,174.69	17.00	374.00	0.75
군위군	64,512.00	6,925.00	1,822.00	16.00	352.00	0.59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全國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실적/사업대상자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 확인 및 생활교육 실시,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2008년 독거노인생활 관리사의 서비스 제공률을 파악.
 - 서비스 제공 실적: (안전 확인 횟수/1,040회)+{(2×생활교육 인원)/120명}+{2×(서비스연계 인원)/120명}
 - 사업대상자: 보건복지부 생활 관리사+서비스 관리자인원×22명

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 군위군의 노인일자리 제공률은 1.63%로 전국 평균, 농어촌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노인일자리 제공률은 전국 평균(3.29%)보다 1.66%pt, 농어촌 평균(3.34%)보다 1.71%pt, 해당그룹 평균(3.47%)보다 1.84%pt 낮음.
- 공공분야의 제공일자리수는 126건수로 해당 그룹과는 141건 이상, 전국과는 414건 이상 차이를 보임.
- 민간분야의 제공일자리수는 0건으로 전국 평균과 86건 이상의 차이를 보임.

〈표 2-13〉 노인일자리 제공률

(단위: 건수, 명, %)

지역	제공일자리수		65세이상 노인수	노인일자리 제공률 (공공분야+민간분야)
	공공	민간		
전국	540.16	86.51	21,850.31	3.29
농어촌	323.47	19.79	11,346.38	3.34
해당그룹	267.31	12.06	9,024.88	3.47
군위군	126.00	0.00	7,735.00	1.6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노인일자리 제공률: {노인일자리 제공 수(공공분야+민간분야×1.3)/65세 이상 인구수}×100
-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65세 이상 인구대비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제공수의 비율로 파악함.
 - 공공분야(공익, 복지, 교육형)의 경우 노인일자리 제공 수는 실 참여기간을 7개월로 환산한 수를 의미
 - 일자리 제공 수는 참여노인의 실제 근무기간의 합을 7개월로 나누어 환산한 일자리수의 개념임(소수 점 발생시 올림 처리)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자체부담으로 일자리를 제공한 실적도 포함.
 - 민간분야(시장형, 인력차건형)의 경우 노인일자리 제공수를 지방자체단체가 지원하는 기관 및 노인 일자리 박람회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실적을 의미함. (계산식에서 가중치 부여×1.3)

다. 장기요양시설 확충도

□ 군위군의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은 7.26%로 전국 평균, 농어촌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노인요양시설 확충률은 전국 평균(87.62%)보다 80.36%pt, 농어촌 평균(101.68%)보다 94.42%pt, 해당그룹 평균(79.16%)보다 71.9%pt 낮음.

〈표 2-14〉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단위: 명, %)

지역	요양시설 정원	시설이용대상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전국	295.25	992.50	87.62
농어촌	181.42	181.62	101.68
해당그룹	112.06	144.38	79.16
군위군	9.00	124.00	7.2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기요양시설 확충률: (노인요양시설 총 정원/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100
- 노인요양시설 총 정원: 노인요양시설, 그룹홈, 소규모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기관의 정원
 -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수×0.016(전국 시설입소 수요를 평균한 값)
 -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노인요양시설
 -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해당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소속으로 간주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시설 중 타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을 받는 경우는 타 지자체의 소속으로 간주

3. 아동·청소년복지

□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전국 평균 64.66점보다 9.66점 낮음.

-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임.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58점으로 전국 평균 53점보다 높음.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의 점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의 점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함.

〈표 2-15〉 아동·청소년복지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단위: 점)		
		만점	전국 평균	군위군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 기반의 적절성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40	24.84	22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30	21.32	12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30	18.50	21
	계	100	64.66	55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활용도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40	16.39	16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20	9.72	14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40	26.89	28
	계	100	53.00	58

가.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

□ 군위군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은 1.19%로 전국 평균 4.33%, 농어촌 평균 4.12%, 해당그룹 평균 4.50%보다 낮음.

○ 청소년 유해업소수는 168개로 전국(1,295개), 농어촌(344개) 및 해당그룹(287개)의 평균보다 적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청소년 보호법상 적발 단속건수가 더 큰 폭으로 전국, 농어촌 및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적음.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는 5건으로, 해당그룹 평균보다 24건, 전국 평균보다 79건 이상 적은 수치임.

— 청소년 보호법상 적발 단속 건수는 0건임.

• 전국 평균은 8.27건, 농어촌 평균은 1.48건, 해당그룹 평균은 1.06건임.

〈표 2-16〉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단위: 건수, %)

지역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횟수	청소년 보호법상 적발 단속 건수	청소년 유해 업소 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전국	102.27	8.27	1,295.00	4.33
농어촌	30.56	1.48	344.05	4.12
해당그룹	28.50	1.06	287.44	4.50
군위군	5.00	0.00	168.00	1.19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 $\{(\text{단속횟수}/\text{청소년유해업소수} \times 0.4) + (\text{적발건수}/\text{청소년유해업소수} \times 0.6)\} \times 100$
 - 단속횟수: 공식적으로 일지에 기재되었거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횟수를 말함.
 - 단속횟수의 경우 1일 기준으로 결재한 것을 1회로 산정하나 기간을 정하여 단속명령(결재서류 또는 단속결과보고서류에서 확인)이 있는 경우는 횟수를 단속일수로 함. (예: 5일간 단속한 경우 5회로 인정)
 - 적발건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 모두 포함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는 0점으로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보다 낮음.

○ 이는 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와 CYS-Net의 미시행으로 나타난 결과임.

○ 이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이 마련되기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표 2-17〉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단위: 개, 회, 점)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여부(설치) ¹⁾	CYS-Net 시행 여부(시행) ¹⁾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전국	133	75	0.50
농어촌	38	15	0.38
해당그룹	6	6	0.32
군위군 ²⁾	0	0	0.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농어촌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16개 지자체의 합계임; 2)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여부: 설치(1), 미설치(0); CYS-Net 시행여부: 시행(1), 미시행(0); 3)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는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 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text{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자치단체} \times 0.7) + (\text{CYS-Net 시행 자치단체} \times 0.3)\} / \text{시군구수}$
-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비 보조 기관임.
 - CYS-Net 시행 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국고와 지방비 보조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임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군위군의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은 1.31%로 전국 평균, 농어촌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높음.

- 청소년수련시설 연간 이용자수는 39,332명으로 전국(32,548명) 및 농어촌(32,548명)의 평균보다 적음.
- 청소년수련시설 수용정원은 100명으로 전국(569명), 농어촌(270명) 및 해당그룹(293명)의 평균보다 적음.

〈표 2-18〉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단위: 명, %)

지역	연간 이용자수	수용 정원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전국	181,040.67	569.00	1.01
농어촌	32,547.91	270.31	0.56
해당그룹	47,236.31	293.25	0.70
군위군	39,332.00	100.00	1.3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청소년수련시설 가동률 평가점수: {연간 이용자수/(수용정원×연간시설 가동가능일수)}×100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내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07.12.31 현재 등록 운영 중인 시설에 한함)
 - 연간 이용자수: 해당 시·군·구내에 있는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전체 이용자수
※ 연간 이용자수는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실적)에 의한.
 - 수용정원: 「청소년활동진흥법 별표 2(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법적 수용 정원
 - 연간가동가능일수: 시설자체 휴관일을 제외한 일수(08년 기준: 301일)
* 365일중 휴관일(주1회 휴가+추석+설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기준

나.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

□ 군위군의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은 6.76%로 전국 평균, 농어촌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지역사회 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은 전국평균(8.97%)보다 2.21%pt, 농어촌 평균 3.25%pt, 해당그룹 평균(8.46%)보다 1.7%pt 낮음.

〈표 2-19〉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단위: 명, %)

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	방과후 보호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수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전국	1,338.87	116.37	8.97
농어촌	494.83	49.44	9.92
해당그룹	372.19	32.56	8.46
군위군	207.00	14.00	6.7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비율: (방과후 보호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초등학교 아동수/국민기초생활수급 초등학교 아동수)×100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등 법적요건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서 저소득층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프로그램 운영시 모두 포함(방과후 학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초등학교 아동수는 보건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연명부 발행을 이용하도록 함.(보건복지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복지정책지원→ 사업실적 내역 출력→ 수급자 현황→ 연령별 현황→ 해당년도→ 해당분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수를 파악하도록 함)
 - 방과후 아동보호 실시기관별 방과후 보호대상 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와 초등학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제1항에 의하면,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 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등학교생수 및 방과후 보호대상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등학교생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산정되어야 함.(보건복지부 현황자료에 의한)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저축률은 94.12%로 전국 평균, 농어촌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CDA)는 전국 평균(86.14%)보다 7.98%pt, 농어촌 평균(88.42%)보다 5.7%pt, 해당그룹 평균(92.5%)보다 1.62%pt 높음.

○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 34명 중 32명이 저축아동임.

〈표 2-20〉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단위: 명, %)

지역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수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 아동 중 저축 아동수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전국	137.93	116.58	86.14
농어촌	70.09	62.98	88.42
해당그룹	61.06	57.00	92.50
군위군	34.00	32.00	94.12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全國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수 중 저축 아동수/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수)×100

- 08.12월 현재 요보호아동 중에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아동 중 저축 아동수의 비율을 의미함.
- 대상아동은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아동보호시설아동, 공동생활아동, 시설보호 장애아동 등이며, 만 0~17세 아동으로써 보호기간이 6개월 이상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지원함.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에 의함)

□ 군위군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은 0.7%로 전국 평균 0.59%, 농어촌 평균 0.64%, 해당그룹 평균 0.68%보다 높음.

○ 요보호 아동 중 관내보호비율은 전국 평균, 농어촌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높으나, 관내보호아동 중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 수는 이들보다 낮음.

— 요보호아동 중 관내보호비율은 100%로, 전국 평균(82%), 농어촌 평균(90%), 해당그룹 평균(96%) 보다 높음.

— 관내보호아동 중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 수는 0.00%로, 전국 평균(5%), 농어촌 평균(2%), 해당그룹 평균(2%)보다 낮음.

〈표 2-21〉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

(단위: 건, 명, %)

지역	관내 요보호 아동 발생수	관내 보호조치 아동수	요보호 아동 중 관내 보호 비율	관내시설 보호·가정 보호 아동수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수	관내 보호아동 중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수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전국	55.73	34.32	0.82	168.13	11.15	0.05	0.59
농어촌	14.73	13.70	0.90	88.17	2.49	0.02	0.64
해당그룹	14.94	14.25	0.96	84.44	4.81	0.02	0.68
군위군	5.00	5.00	1.00	38.00	0.00	0.00	0.7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요보호아동 관내보호 비율 및 타 지역발생 보호아동 비율: $\{(\text{시군구 발생\&보호조치 아동수(B)}/\text{시군구 발생 요보호 아동수(A)}) \times 0.7\} + \{(\text{타 지역 발생\&관내보호 아동수(E)}/\text{시군구 시설보호\&가정보호 아동수(D)}) \times 0.3\}$
- 시군구 발생\&보호조치 아동수(B): 해당 시군구 발생 요보호아동 중 관내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수
 - 시군구 발생 요보호 아동수(A): 요보호아동 발생 아동수('08.12월 기준, 누계)
 - 타 지역 발생\&관내보호 아동수(E): 타시군구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을 관내에서 보호한 아동수
 - 시군구 시설보호\&가정보호 아동수(D):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보호아동 현원

4. 보육

□ 군위군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은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국 평균 65.75점보다 다소 낮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1.75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40점 만점으로 타 세부 평가지표에 비해 가장 잘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보육수요 충족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취약보육실시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모두 20점 만점에서 8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임.

〈표 2-22〉 보육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군위군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보육수요 충족률	20	13.79	8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20	11.38	8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40	26.63	40
	취약보육실시율	20	13.95	8
	계	100	65.75	64

가.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

□ 군위군의 보육수요 충족률은 44.48%로 전국 평균 55.82%, 농어촌 평균 59.23%, 해당그룹 평균 55.66%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11.34%pt 낮으며 농어촌 평균보다는 14.75%pt,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14.75%pt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3〉 보육수요 충족률

(단위: 명, %)

지역	보육시설 정원	영유아 수	보육수요 충족률
전국	6,159.92	11,995.57	55.82
농어촌	1,450.56	2,395.49	59.23
해당그룹	823.00	1,407.88	55.66
군위군	314.00	706.00	44.4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보육수요 충족률: (보육시설 정원수/전체 영유아수)×100
 - 보육시설 정원은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공표되는 지역별 보육시설 보육아동(정원) 현황 자료를 활용함.
 - 평가연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월(9월 또는 6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군위군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는 08년도와 07년도의 보육시설 수가 각각 0개소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체 영유아수에 대한 보육시설 정원 비율은 44.48%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그룹 평균 58.46%보다 낮음.

○ 전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에 대한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는 0%로 분석되었으며, 해당그룹 평균 16.26%보다 훨씬 낮음.

〈표 2-2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단위: 명, 개소)

지역	07년 국공립 보육시설수	08년 국공립 보육시설수	전체 영유아수	보육시설 정원수	보육시설 이용 전체 영유아 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전국	7.51	7.87	11,995.57	6,159.92	4,894.41	531.92	0.36
농어촌	2.07	2.27	2,395.49	1,450.56	1,126.70	119.62	0.20
해당그룹	1.94	1.94	1,407.88	823.00	657.63	106.94	0.00
군위군	0.00	0.00	706.00	314.00	202.00	0.00	0.00

주: 1) 통계당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수: 08년 국공립 보육시설수-07년 국공립 보육시설수
- 평가연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며,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월(9월 또는 6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일정 수준 충족시 기본점수 부여
 - 보육시설 공급 초과지역: 전체 영유아 수 대비 보육시설 정원수 비율이 100%가 넘는 지역
 -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일정 수준 충족 지역: 전체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수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한.

□ 군위군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은 37.50%로 전국 평균 30.03%, 농어촌 평균 34.24%보다는 높은 반면, 해당그룹 평균 39.19%보다는 낮음.

-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전국 평균(30.03%)보다는 7.47%pt, 농어촌 평균보다는 5.36%pt 높으며, 해당그룹 평균(39.19%)보다는 1.69%pt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5〉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단위: 개소, %)

지역	전체 보육시설수	평가인증 보육시설수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수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전국	142.95	42.78	23.19	30.03
농어촌	23.68	10.19	4.84	34.24
해당그룹	12.81	6.50	2.94	39.19
군위군	4.00	2.00	1.00	37.50

주: 1) 통계당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2
-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 (평가인증 보육시설수/전체 보육시설수)×100
 - 시군구의 전체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 비율
 -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은: (당해연도 평가인증 보육시설수/전체 보육시설수)×100
 - 시군구의 전체 보육시설 중 당해연도에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의 비율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한

□ 군위군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30.20%로 전국 평균 43.44%, 농어촌 평균 37.31%, 해당그룹의 평균 34.26%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43.44%)보다 13.24%pt, 농어촌 평균보다 7.11%pt, 해당그룹 평균보다 4.06%pt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군위군의 취약보육 실시율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짐.

○ 장애아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 보육 이용 아동수는 0명으로 나타나 해당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6〉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지역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 이용수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수	휴일보육 이용수	취약보육 실시율
전국	4,894.41	2,163.31	66.94	75.99	0.19	43.44
농어촌	1,126.70	409.90	7.43	17.53	0.00	37.31
해당그룹	657.63	224.31	1.75	10.94	0.00	34.26
군위군	202.00	61.00	0.00	0.00	0.00	30.2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全國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취약보육실시율: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휴일보육 이용 아동수/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100
 - 시도별 취약 보육 이용 아동수는 e-보육 통계시스템으로 파악함.
 - 영아이면서 장애아인 경우는 중복으로 계산함.
 - 영아는 만3세 미만 아동, 장애아는 무상보육대상 장애아를 의미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실적)에 의함

5. 장애인복지

□ 군위군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100점 만점에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56.32점보다 낮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장애인전용 주차지역 과태료 부과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장애인전용 주차지역 과태료 부과건수」는 각각의 만점의 기본점수를 보임.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군위군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은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전국 평균 71.62점보다 높음.

○ 이는 장애인복지영역의 다른 평가지표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군위군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는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전국 평균 66.96점보다 높음.

○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 비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함.

〈표 2-27〉 장애인복지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군위군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30	17.90	12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25	15.10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5	6.62	6
	「장애인차별금지법」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20	11.35	8
	장애인전용 주차지역 과태료 부과건수	10	5.36	4
	계	100	56.32	40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100	71.62	85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50	33.71	35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비율	30	21.23	26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	10	5.81	6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 비율	10	6.21	6
	계	100	66.96	73

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도

□ 군위군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설치율은 0%로 전국 평균 0.35%, 농어촌 평균 0.27%, 해당그룹 평균 0.39%보다 매우 낮음.

○ 군위군의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2-2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단위: 명, 개소, %)

지역	등록장애인수	직업재활 시설수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총 정원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전국	9,686	1.56	30.23	0.35
농어촌	3,967	0.38	9.94	0.27
해당그룹	2,931	0.31	9.00	0.39
군위군	1,970	0.00	0.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정원수/등록장애인수)×100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근로장애인 정원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장애인의 정원 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 보호사업장,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 장애인 인구수: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설치율이 0%인 지자체는 최저점수 부여

□ 군위군의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은 0%로 전국 평균 1.19%, 농어촌 평균 1.00%, 해당그룹 평균 0.88%에 비해 매우 낮음.

- 군위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도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 등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그룹홈과 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29〉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단위: 명, %)

지역	등록 장애인 수	거주 시설 수	거주시설 총 정원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전국	9,686	5.66	100.39	1.19
농어촌	3,967	1.31	39.10	1.00
해당그룹	2,931	0.75	22.38	0.88
군위군	1,970	0.00	0.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거주시설입소 장애인 정원수/등록장애인수)×100
-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로서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이들 시설의 입소 정원 총수
 - 장애인 인구수: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 02~06년까지 신고한 조건부시설에서 전환된 개인운영 신고시설은 제외
 - ※ 설치율이 0%인 지자체는 최저점수 부여

□ 군위군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76.02%로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 평균보다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63.76%)과 비교했을 때 12.26%pt 높으며, 농어촌 평균(68.05%)보다 7.97%pt, 해당그룹 평균(64.19%)보다 11.83%pt 높음.

〈표 2-3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개, %)

지역	설치대상 건물수(설치의무 항목수)	기설치 건물수(설치 항목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14,998.54	9,130.94	63.76
농어촌	6,317.26	7,292.59	68.05
해당그룹	5,050.81	3,149.50	64.19
군위군	5,975.00	4,542.00	76.02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정원기준): (기설치 건물수/설치대상 건물수)×10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별 설치율(시·군·구별 파악)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별도증빙 불필요)

□ 군위군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는 0점으로 분석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지자체에서 반드시 설치 또는 배치해야 하는 8개 항목 중 하나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31〉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단위: 개, 점)

지역	인쇄물 음성출력기 ¹⁾	점자자료 제작 ¹⁾	영상 전화기 ¹⁾	수화 통역사 ¹⁾	장애인전담 도우미 ¹⁾	보청 기기 ¹⁾	확대경 ¹⁾	휠체어 ¹⁾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전국	18	36	70	51	81	59	59	53	1.84
농어촌	7	7	17	22	42	16	19	15	1.79
해당그룹	3	0	1	4	8	2	3	2	1.44
군위군	0	0	0	0	0	0	0	0	0.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농어촌 81개 지자체, 해당그룹 16개 지자체의 집계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는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인쇄물음성출력기기·점자자료 제작·영상전화기·수화통역사·장애인전담도우미·보청기기·확대경·휠체어에 대한 준수여부 파악(*1: 예, 0: 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인쇄물음성출력기기·점자자료 제작·영상전화기·보청기기·확대경 설치 및 수화통역사·장애인전담도우미 배치 등)에 대한 준수여부 파악
- * 기관별 설치 또는 배치 여부만 파악(사용횟수는 무관함)

□ 군위군의 장애인 부과건수는 0건으로 전국 평균 13.29건, 농어촌 평균 1.36건, 해당그룹 평균 0.25건에 비해 상당히 낮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의 부과건수임.

〈표 2-3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단위: 건수)

지역	과태료 부과건수
전국	13.29
농어촌	1.36
해당그룹	0.25
군위군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건수/시군구수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건수

나.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율

□ 군위군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은 23.07%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반면, 농어촌 평균과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20.89%)보다는 2.18%pt 높은 반면, 농어촌 평균(27.43%) 4.36%pt, 해당그룹 평균(27.85%)보다는 4.78%pt 낮음.

〈표 2-33〉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단위: 명, %)

지역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혜자수	등록장애인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전국	1,708	9,685	20.89
농어촌	1,082	3,967	27.43
해당그룹	829	2,931	27.85
군위군	454	1,970	23.07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수/등록장애인수)×100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수: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혜한 자들의 총수(연평균)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수혜한 경우 이중으로 처리함.
 - 복지서비스: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활동보조서비스
 - * 등록장애인수: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에 의함(중빙 불필요)
 - * 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자 현황: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함.
 -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장애수당 수혜자 현황(예. 주소지가 다른 시설 수급자)은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한 장애수당 수혜자 수와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현황자료상 장애수당 수혜자 수를 합하여 입력

다.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사업 성과

□ 군위군의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은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보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군위군의 우선구매 비율 충족 품목수와 우선구매대상 구매품목수는 각각 8건으로 100% 준수됨.

〈표 2-34〉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단위: 개, %)

지역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수	우선구매대상 구매품목 수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전국	8.95	11.69	80.05
농어촌	10.37	11.26	92.57
해당그룹	9.88	10.50	94.00
군위군	8.00	8.00	10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수/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품목 수)×100
-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수: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한 품목의 개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품목수: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 개수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한.

□ 군위군의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은 85.78%로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의 평균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57.07%)보다 28.71%pt, 농어촌 평균 (66.12%)보다 19.66%pt, 해당그룹 평균(72.48%)보다 13.3%pt 높음.

〈표 2-35〉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단위: 건, 천원, %)

지역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 생산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총액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전국	110,265	226,692.80	57.07
농어촌	50,706	84,347.17	66.12
해당그룹	55,858	85,433.00	72.48
군위군	33,899	39,518.00	85.7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대상 품목구매 비율: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물 구매액/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 총액)×100
-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물 구매액: 18개 우선구매품목 중 장애인생산물 구매액의 합계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입총액: 우선구매품목 18개의 구매액 총계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한.

□ 군위군의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은 81.09%로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 평균 보다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58.59%)보다 22.5%pt, 농어촌 평균(71.25%) 보다 9.84%pt, 해당그룹 평균(64.00%)보다 17.09%pt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6〉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단위: 천원, %)

지역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물 구매액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총액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전국	17,801.08	45,785.41	58.59
농어촌	2,493.40	4,163.85	71.25
해당그룹	3,429.31	4,741.38	64.00
군위군	446.00	550.00	81.09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 비율: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물 구매액/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 총액)×100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물 구매액: 18개 우선구매품목을 제외한 기타 물품구입 중 장애인생산물 구매액의 합계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총액: 우선구매품목 18개 이외 물품 구매액 총계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군위군의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은 44.44%로 전국 평균, 농어촌 평균, 해당 그룹 평균보다 비교적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49.78%)보다 5.34%pt, 농어촌 평균(57.61%)보다 13.17%pt, 해당그룹 평균(54.86%)보다 10.42%pt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7〉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단위: 개, %)

지역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수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전국	8.96	49.78
농어촌	10.37	57.61
해당그룹	9.88	54.86
군위군	8.00	44.44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수/우선구매대상 품목수)×100
- 우선구매대상 비율 충족품목수: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품목 18개 중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한 품목의 개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수: 18개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6. 지역사회서비스

□ 군위군의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100점 만점에 40점(기본점수)으로 전국 평균 62.41점보다 낮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 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관련한 모든 세부 평가지표에서 각각 기본점수를 나타냄.

□ 군위군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는 100점 만점에 48점으로 전국 평균 61.56점 보다 낮음.

○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은 전국 평균과 비슷함.

○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임.

— 특히,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은 50점 만점의 기본점수인 20점을 보임.

□ 군위군의 「사회서비스업무 추진의 적절성」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전국 평균 71.24점보다 낮음.

○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은 전국 평균과 비슷함.

○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특히,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은 기본점수로 분석되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표 2-38〉 지역사회서비스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단위: 점)		
		만점	전국 평균	군위군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40	25.36	1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30	19.06	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30	17.98	12
	계	100	62.41	40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50	28.29	28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50	33.26	20
	계	100	61.56	48
사회서비스 업무 추진의 적절성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50	35.05	20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50	36.19	35
	계	100	71.24	55

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 군위군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은 0%로 전국 평균 2.83%, 농어촌 평균 1.69%, 해당그룹 평균 1.63%보다 매우 낮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3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단위: 건수)	
지역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시행건수
전국	2.83
농어촌	1.69
해당그룹	1.63
군위군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건수/시군구 수)×100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건수: '08년 시군구당 사업시행 건수
 * 사업건수는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 군위군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은 0%로 전국 평균 1.29%, 농어촌 평균 0.93%, 해당그룹 평균 0.78%보다 매우 낮음.

○ 이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시행건수, 제공기관수, 제공기관이 2이상인 사업수가 모두 0인 결과로 보임.

〈표 2-4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단위: 기관, %)

지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시행건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제공기관수	제공기관이 20이상인 사업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전국	2.83	5.72	1.25	1.29
농어촌	1.69	2.46	0.52	0.93
해당그룹	1.63	2.13	0.44	0.78
군위군	0.00	0.00	0.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제공기관수/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 사업수) \times 0.5\} + \{(서비스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 수/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전체 사업수) \times 0.5\}$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의 1개 사업당 서비스 제공기관 수
-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의 1개 사업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2개 이상인 사업
* 사업실적은 보건복지부의 현황 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 군위군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평균 취업자 수는 0명으로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 보다 매우 낮음.

○ 특히, 해당그룹 평균은 63.06명으로 조사되어 군위군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표 2-4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단위: 명)

지역	0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균 취업자수
전국	249.69
농어촌	92.54
해당그룹	63.06
군위군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업자수/시군구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창출 일자리 수
* 월별 누계 인원, 정규·비정규직 등 바우처 사업에 종사한 모든 근로자 포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도

□ 군위군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는 17.80%로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22.18%)보다 4.38%pt, 농어촌 평균(26.65%)보다 8.85%pt, 해당그룹 평균(35.90%)보다 18.1%pt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2〉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단위: 명, %)

지역	중도 해지자수	전체 서비스 이용자 수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노인돌보미 제외)
전국	483.32	2,407.19	22.18
농어촌	214.88	743.49	26.65
해당그룹	255.75	522.94	35.90
군위군	34.00	191.00	17.8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全國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 (중도 해지자수/전체 서비스 이용자수)×100
- * 4대 바우처 중 노인돌보미 제외
 - 전체 서비스 이용자 수: '08년 연간 전체 서비스 이용자수
 - 중도 해지자수: 사업 참여자 중 지원기간 종료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된 인원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군위군의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은 0.9%로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1.35%), 농어촌 평균(1.60%), 해당그룹 평균(1.63%)보다 낮은 비율을 보임.

〈표 2-43〉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단위: 명, %)

지역	서비스 이용자수	시군구별 인구수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전국	2,494.28	213,850.87	1.35
농어촌	815.65	52,404.49	1.60
해당그룹	591.75	36,327.75	1.63
군위군	227.00	25,309.00	0.9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全國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서비스 이용자수/인구수)×100
 - * 4대 바우처 공통적용
 - * 4대 바우처 사업 대상자수: 노인, 장애인, 산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수
 - 서비스 이용자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수
 - * 사업대상자수: 노인, 장애인, 산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대 바우처 대상자수
 - 인구수: '08년 12월말 기준(통계청 자료 참조)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 사회서비스 바우처 통합정보 운영자 시스템상 실적과 동일하게 입력

다. 사회서비스 업무 추진의 적절성

□ 군위군의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은 59.81%로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 평균보다 훨씬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83.03%)보다 23.22%pt, 농어촌 평균(79.46%)보다 19.65%pt, 해당그룹 평균(78.20%)보다 18.39%pt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4〉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단위: 천원, %)

지역	집행액	예산액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전국	1,132,460.9	1,324,809.4	83.03
농어촌	408,568.6	509,172.8	79.46
해당그룹	309,931.5	389,607.7	78.20
군위군	94,042.1	157,240.0	59.8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全國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 (집행액/예산액)×100
 - 집행액: 시군구별 예산 실 집행액
 - 예산액: 시군구별 예산 편성액(결산서 기준)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 군위군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은 83.75%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반면, 농어촌, 해당그룹 평균보다는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81.75%)보다 2.00%pt 높은 반면, 농어촌 평균(88.50%)보다 4.75%pt, 해당그룹 평균(87.68%)보다 3.93%pt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5〉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단위: 천원, %)

지역	이용액	생성액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전국	1,114,984.3	1,604,458.0	81.75
농어촌	408,568.6	466,195.5	88.50
해당그룹	309,931.0	360,213.2	87.68
군위군	94,042.1	112,294.4	83.7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이용액/생성액)×100
- 이용액: 바우처 이용액
 - 생성액: 바우처 생성액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7. 기초생활보장

□ 군위군의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는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전국 평균 79.64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 가구수’는 50점 만점으로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평균(48.70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전국 평균(30.94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본점수로 분석되어 기초생활 보장 모니터링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군위군의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은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국 평균 67.49점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급여조정 실적’과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점수를 보임.
-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은 40점 만점에 22점으로 전국 평균(25.41)보다 3.41점 낮아 신규수급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46〉 기초생활보장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단위: 점)	
			전국 평균	군위군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 가구수	50	48.70	50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50	30.94	20
	계	100	79.64	70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40	25.41	22
	급여조정 실적	40	28.05	28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20	14.02	14
	계	100	67.49	64

가. 기초생활보장 업무기반 확충도

□ 군위군의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수는 69.6명으로 전국 평균 89.84명, 농어촌 평균 74.44명, 해당그룹 평균 71.56명보다 적음.

○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전국 평균보다 20.24명, 농어촌 평균보다 4.85명, 해당 그룹 평균보다 1.96명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수가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부담이 적어 수급 가구가 잘 관리 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47〉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단위: 가구, 명)			
지역	수급가구수	사회복지직 공무원수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수급가구 수
전국	3,681.92	39.34	89.84
농어촌	1,813.50	24.19	74.45
해당그룹	1,530.63	20.94	71.56
군위군	1,044.00	15.00	69.6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가구수: 수급자수/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수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08.12.31일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현원으로 잡혀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기초수급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직급상관 없음)수를 시군구 단위로 합산한 수(새울행정시스템 권한이 확인된 인원수)
 - 수급자 수: 2008.12월 31일 현재 수급자수(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 군위군의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 실적은 0건으로 전국 평균 0.28건, 농어촌 평균 0.17건, 해당그룹 평균 0.10건 보다 낮음.

○ 모니터링 요원수가 0명으로 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의 배치 등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48〉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 실적

(단위: 명, 회, 건수)

지역	모니터링 요원수 ¹⁾	중앙현장 조사횟수 ¹⁾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전국	44	116	0.28
농어촌	8	27	0.17
해당그룹	1	3	0.10
군위군	0	0	0.00

주: 1) 전국 232개 지자체, 농어촌 81개 지자체, 해당그룹 16개 지자체의 합계임; 2)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 실적: (모니터링 요원수×0.7)+(중앙현장조사 횟수×0.3)
 - 모니터링 요원: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자(파견자 포함)
 - 중앙현장조사요원 파견: '08년 중 중앙현장조사에 참여한 연인원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나.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 군위군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11.93%로 전국 평균 12.41%보다는 낮은 반면, 농어촌 평균 10.00% 및 해당그룹 평균 10.08%보다는 높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0.48%pt 낮고, 농어촌 평균보다 1.93%, 해당그룹 평균보다 1.85%pt 높음.

— 이는 군위군의 신규수급자 발굴이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줌.

〈표 2-49〉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

지역	신규 수급자수	총 수급자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전국	794.35	6,224.18	12.41
농어촌	281.44	2,859.43	10.00
해당그룹	229.69	2,340.81	10.08
군위군	181.00	1,517.00	11.93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신규 수급자수/총 수급자수)×100
- 신규 수급자수: '08년 1~12월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가구원수
 - 총 수급자수: '08.12.31일 현재 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수

□ 군위군의 급여조정 실적은 0.78건으로 전국 평균 0.76건, 농어촌 평균 0.78건, 해당그룹 평균 0.77건과 비슷한 수준임.

○ 이는 급여조정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2-50〉 급여조정 실적

(단위: 건, 가구)

지역	보장중지 건수	급여감소 건수	급여증가 건수	수급자 가구수	급여조정 실적
전국	881.58	4,633.56	4,716.06	3,681.92	0.76
농어촌	337.11	2,478.05	2,442.19	1,813.51	0.78
해당그룹	257.63	2,210.19	1,860.56	1,530.63	0.77
군위군	193.00	1,827.00	1,003.00	1,044.00	0.78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급여조정 실적: (보장중지 건수/수급자가구수×0.5)+(급여감소 건수/수급자가구수×0.25)+(급여증가 건수/수급자가구수×0.25)
- 급여조정의 범위: 수급자가구 중 '08. 1~2월까지 조사를 통해 보장중지 되거나 급여가 변경결정 되어 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가구 수(중복포함, 누계)
 - 보장중지 건수: 수급자에게 중지된 건
 - 급여감소/증가건수: 생계, 주거급여가 감소/증가된 건
 - 가구원 전부, 일부 전출, 사망, 군입대, 교정시설 수용, 보장시설입소, 행불(가출), 최저생계비 기준(현 급여액) 변경에 따른 급여조정 등은 제외
 - 수급자가구 수: '08.12.31일 현재 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가구 수

□ 군위군의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은 0.2건으로 전국 평균 0.32건, 농어촌 평균 0.35건, 해당그룹 평균 0.38건보다 낮음.

- 이는 전국 평균보다 0.12건, 농어촌 평균보다 0.15건, 해당그룹 평균보다 0.18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 건수는 0건으로 의료 지원을 제외한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표 2-51〉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단위: 건수)

지역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 건수	차상위계층 등 긴급지원 결정 건수	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전국	17.58	61.28	118.17	0.32
농어촌	8.56	28.52	50.77	0.35
해당그룹	9.63	28.25	47.50	0.38
군위군	0.00	8.00	20.00	0.2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긴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text{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건수}/\text{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 \times 0.5\} + \{(\text{차상위계층 등 긴급지원 결정건수}/\text{전체 긴급지원 결정건수}) \times 0.5\}$
- 의료지원을 제외한 타 지원 결정건수: '08.1~12월까지 의료지원을 제외한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지원 결정하여 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건수
 - 차상위계층 등 긴급지원 결정건수: '08.1~12월까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대상으로 긴급지원을 지원 결정하여 새울행정시스템에 입력된 건수
 - * 공통: 수급자에는 특례, 시설수급자를 포함함(차상위수급자 제외)
 - * 새울행정시스템 관련자료 추출

8. 자활영역

□ 군위군의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는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전국 평균 71.31점과 비슷함.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점수를 보임.
- ‘수급자의 취업·창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표 2-52〉 자활영역의 전국 평균 및 군위군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만점	전국 평균	군위군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30	24.23	30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30	19.63	12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40	27.51	28
	계	100	71.31	70

가.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 군위군의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은 49.15%로 전국 평균, 농어촌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높음.

○ 전국 평균(29.32%)과 비교했을 때 19.83%pt 농어촌 평균(29.05%)보다 20.1%pt, 해당그룹 평균(23.24%)보다 25.91%pt 높음.

〈표 2-53〉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단위: 명, %)

지역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전국	80.47	287.45	29.32
농어촌	41.80	139.21	29.05
해당그룹	32.69	121.94	23.24
군위군	29.00	59.00	49.15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100
1)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시장진입형+인턴형+공동체창업+개인 창업+취업알선
2)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근로유지형+사회적응 프로그램+사회적일자리형+시장진입형+인턴형+공동체창업+개인창업+취업알선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인원: 업그레이드형 이상(사회적일자리형 제외)
- 자활사업 실질(누계) 참여인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참여 인원
(* 보건복지부의 자료 활용) * 노동부 사업 제외

□ 군위군의 수급자의 취업·창업률은 0%로 분석됨.

○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전국 평균 8.3%, 농어촌 평균 7.63%, 해당그룹 평균 4.65%보다 매우 낮은 수치임.

〈표 2-54〉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단위: 명, %)

지역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중 취업인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창업한 인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전국	5.14	4.21	117.95	8.30
농어촌	1.28	2.53	42.98	7.63
해당그룹	0.94	1.63	37.06	4.65
군위군	0.00	0.00	37.00	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취업 및 창업 인원/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수)×100
- 1) 취업 및 창업한 인원: 수급자중 취업 및 창업한자+자활특례 상향 이동자+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 2)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자활공동체+개인창업+취업알선+노동부사업
- 취업 및 창업 인원: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중 취업이나 창업한 인원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수: 수급자중 업그레이드형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보건복지부에서 자료 활용)

□ 군위군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5.41%로 전국 평균, 농어촌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7.48%)보다 2.07%pt, 농어촌 평균(7.76%)보다 2.35%pt, 해당그룹 평균(8.59%)보다 3.18%pt 낮음.

〈표 2-55〉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지역	수급자 중 취업·창업자수	특례상향 이동자	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전국	3.38	3.21	2.13	117.95	7.48
농어촌	1.37	1.57	0.69	42.99	7.76
해당그룹	1.50	1.44	0.56	37.06	8.59
군위군	0.00	2.00	0.00	37.00	5.4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탈수급자수/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수)×100
- 1) 탈수급자수: 수급자 벗어난 인원(자활특례 포함)+기타 소득기준 초과자
 - 2)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시장진입형+사회적일자리형+인턴형+자활공동체+개인창업+취업알선+노동부사업
- 탈수급자 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중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수급자에서 벗어난 인원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누계) 수급자 수: 수급자중 업그레이드형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 *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분기별 자활사업 추진현황 보고 자료에 의함

9. 의료급여

가.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 군위군의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는 1.21일로 분석됨.

- 의료급여 자격처리는 수급권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건강보험공단 자격변경을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자격이 변경된 날짜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어 정상 처리된 날짜 간의 간격을 좀 더 줄여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필요함.

〈표 2-56〉 의료급여 자격 처리의 신속도

(단위: 건, 일)

지역	자격변경처리 건수	총 소요일	의료급여 자격 처리의 신속도
전국	3,490.23	4,210.93	1.20
농어촌	1,124.17	1,335.12	1.18
해당그룹	789.56	928.44	1.18
군위군	601.00	729.00	1.21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 총 소요일/’08년 전체 자격변경 건수
-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 자격건당 평균 소요일
 - 2008년도 전체 자격변경 건수: 공단에 접수된 시군구별 자격변경 처리 총 건수
 - 총 소요일: 각 건수의 처리에 소요된 소요일의 총 합
 -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군위군의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0.06%로 증가함.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임.
- 즉, 관리하는 수급권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이상의 진료를 받는 수급권자를 지도·감독해야함.

〈표 2-57〉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단위: 일, %)

지역	2006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2007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2008년도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전국	63.39	62.55	63.74	0.01
농어촌	66.77	65.82	67.61	0.02
해당그룹	66.11	64.41	66.13	0.01
군위군	60.18	57.28	63.50	0.0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전년 대비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3년 평균 1인당 입·내원일수 증가율)/2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입원 및 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파악
 -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에 입·내원일수와 3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의 증감률을 평가함.
 -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군위군의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0.09%를 보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과 같이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임.
- 그러므로 관리하는 수급권자의 급여가 적정한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사위행위를 하는 수급권자를 지도·감독해야함.

〈표 2-58〉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단위: 원, %)

지역	2006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2007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2008년도 적용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전국	1,969.27	2,080.93	2,206.29	0.05
농어촌	1,785.84	1,889.85	2,021.39	0.06
해당그룹	2,058.28	2,139.30	2,253.75	0.04
군위군	2,415.00	2,355.00	2,676.00	0.09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3년 평균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2
- 의료급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평균 진료비와 3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의 증감률을 평가함.
 -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군위군의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은 -0.06%로 감소함.

- 사례관리 대상자는 질병, 빈곤 등을 갖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임.
- 따라서 과다이용의 징후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상담 및 계도를 통하여 적절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표 2-59〉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단위: 일, %)

지역	2006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2007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2008년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전국	700.97	780.12	727.08	-0.02
농어촌	649.98	718.83	678.27	-0.02
해당그룹	643.94	702.31	668.81	-0.02
군위군	610.00	721.00	632.00	-0.06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 전국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전년 대비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 증가율+3년 평균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 증가율)/2
-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급여일수의 증감률을 파악함
 - 해당 시군구의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1인당 당해연도와 전년도에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급여일수와 3년간 사례관리 대상자의 급여일수 증감률을 평가함.
 - *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11개 지역)에서는 집중관리군 대상자만 해당됨
 -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활용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 군위군의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은 100%로 배치기준에 충분한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판단됨.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함.

〈표 2-60〉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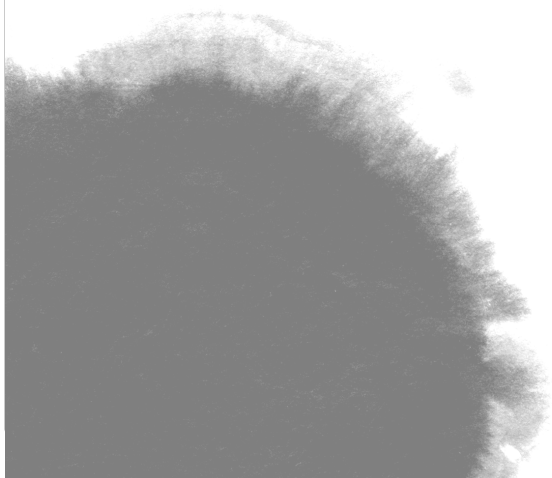
지역	채용인원	배치기준 인원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전국	1.93	1.98	102.67
농어촌	1.17	1.09	108.64
해당그룹	1.06	1.06	100.00
군위군	1.00	1.00	100.00

주: 1) 통계량은 전국 232개의 개별 세부평가지표를 합한 후 232개 지자체로 나눈全國의 평균이며, 농어촌은 81개 지자체, 해당 그룹은 해당그룹의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인원/의료급여 관리사 배치 기준인원)×100
- 2006년도 배치기준: 전국 232개 보장기관 배치완료
 - 2008년도 배치기준:
 - <텔레케어센터 미설치 시군구>
 - 수급권자 6천명 미만: 1명
 - 수급권자 6천명~15천명 미만: 2명
 - 수급권자 15천명~25천명 미만: 3명
 - 수급권자 25천명 이상: 4명
 - <텔레케어센터 설치 시군구>
 - 수급권자 2천 명당 공무원 또는 의료급여 관리사 1인을 배치
 - 2008년도 추가 배치기준: 수급권자 5천 명당 시군구에 대하여 관리사 0.5명으로 산정하여 추가 배치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03

복지정책 발전방안



제3장 복지정책 발전방안

제1절 전반적 방향

- 전반적으로 군위군은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환경의 많은 제한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복지부서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열정이 매우 큼.
 - 군위군은 농어촌의 소규모 지자체로 평가지표가 대도시 중심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 그룹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또한 복지재정의 확충과 시설인프라 구축은 다소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군위군의 2008년도 평가결과가 부진한 원인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 부정사례발생에 따른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원칙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2008년 4월 13일부로 군 본청과 읍면 직원간 100%상호 전보조치로 인해 업무 인계인수와 업무적응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있어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평가 기준연도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점이 개선되었으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이미 확충 또는 개선된 점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발전방안에 완벽히 반영되지는 않은 한계를 가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시하는 발전방안은 향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군위군의 복지정책 평가점수가 낮은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영역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총괄」,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보육」,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자활」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많은 노력이 필요함.
 - 「복지총괄」,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기초생활보장」은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각 영역별 평가 내용을 보면 기반 시설 확충도가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추진되고 있는 많은 요양시설이 완공되었거나 현재 군에서 공사 중인 장기요양 시설 등 지역사회서비스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2절 복지영역별 방안

1. 복지총괄

- 종합의견
 - 군위군의 지자체 사회복지 기반 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어 사회복지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가 적다는 것은 민간복지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군위군의 경우 해당그룹 평균에 1/3밖에 미치지 못함.

- 복지종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인력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 하는 것도 중요함.
- 복지부서 담당 공무원의 영역별 근무 연속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를 많이 고용하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이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제 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은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재정의 비중을 해당그룹 평균의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복지재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이용시설 설치면적’에서 군위군의 사회복지 이용시설 수는 해당그룹의 사회복지이용 시설수의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수대비 이용시설 면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이용시설 확충 및 현재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위군에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은 미설치 된 것으로 파악됨.
 - 사회복지 이용시설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의 특화사업 건수가 낮았으며,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음.
 - 전반적으로 특화사업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민간자원을 개발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복지수준을 꺾을 수 있는 사업 증설이 필요하며, 일회성의 행사보다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지역복지특화사업의 개발과 추진에 보다 큰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2. 노인복지

□ 종합의견

- 군위군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의 성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음.
 - 특히,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수행에 있어서 안전확인횟수는 많은 반면 생활교육과 서비스 연계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수행에 있어서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한 시간동안 제공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하고 수혜노인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
-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에서는 군위군은 해당 그룹 타 지역에 공공, 민간 일자리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민간 분야의 일자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단기적으로 공공일자리의 확대를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민간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함.
 -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이외에 지자체의 특성이나 산업기반 등을 고려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노인일 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데 노력이 필요함.
-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를 위해 현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정도를 파악하고, 부족할 경우 민간시장의 활성화, 공공시설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은 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의 개입으로 개선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변동자료의 적기처리와 부정정 급여의 관리가 요구됨.
- 이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항목으로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아동·청소년복지

□ 종합의견

- 군위군의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활용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아동·청소년보호 및 활동기반의 적절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은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의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청소년 보호법상 적발 단속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도 5회밖에 추진하지 못함.
 - 하지만 단속실적에 군청에서 실시한 실적만 기록하고 읍면에서 자체 단속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타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해야 함.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립하고 유해업소 단속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함.
 -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는 군위군의 경우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아직 구축되어있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청소년지원센터를 증설하고,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이 마련

되기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련시설과 문화의 집을 개설하는 것이 시급함.

•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실무자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비율’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방과후 돌봄의 기능을 하는 시설의 수가 적으며, 민간의 설치유도도 힘든 실정으로 보임.

— 향후,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습등도 지표에 반영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음.

○ ‘요보호아동 관내 보호비율 및 타지역 발생 보호아동 비율’과 관련항 관내 보호조치는 양호하지만, 타지역발생 보호비율이 낮은 것은 아동양육시설이 관내에 없기 때문으로 보임.

—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의 특성상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층의 아동과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실제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통장, 반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아동보호시설과 시설보호 장애아동, 공동생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4. 보육

□ 종합의견

○ 군위군의 보육서비스 확대 실적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군위군의 ‘보육수요 충족률’은 이는 보육시설의 정원이 영유아 수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보육수요 충족률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음을 보여줌.
 - 군위군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가정에서 보육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동 그룹내 상대비교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향후 보육수요 충족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6세 미만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육시설의 확대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수요자 욕구에 따라 직장보육, 부모현장보육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공립 보육시설 확충수’는 전국, 농어촌, 해당그룹의 평균보다 낮음.
 - 군위군의 전체 보육시설 4개소 중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공립 보육시설 확충의 경우도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적어 국공립 보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보육에 대한 공적부분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군위군의 경우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향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 마련이 필요함.
- ‘취약보육 실시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농어촌, 해당그룹의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남.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 수에 비해 영아, 장애아 보육 이용수와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수가 0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보임.
 - 취약 계층에 있는 영아, 장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기관이 더 증설되어야 하며, 보육 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5. 장애인복지

□ 종합의견

- 군위군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과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사업 성과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 기반 및 복지서비스 확대 영역의 지표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율,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율,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등은 매년 평가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 등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 그룹홈과 단기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의 경우,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등 현금 급여에 대한 지원 범위가 핵심 평가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당연 지급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 장애인에 대한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임.

6. 지역사회서비스

□ 종합의견

- 군위군의 지역사회서비스 평가결과는 전국 평가결과의 최저점 보다는 다소 높지만 해당 그룹내 최저점 수준으로 나타남.
 - 아울러 해당 그룹의 복지총괄을 비롯한 총 8개의 기타 영역별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 취약성이 큰 것으로 확인됨.
- 평가영역별로 볼 때,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사회서비스 사업 활용도 및 사업추진의 적절성 등 3개 영역 모두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영역의 취약성이 지역사회서비스 영역 전체의 평균점수를 감소시키고 있음.

□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사회서비스의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한정된 서비스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면서 동 사업의 이용률이 전국 평균 및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예산 집행률이 해당 그룹내 평균 집행률은 물론 전국 평균 집행률 보다 크게 저조한 실정임.

— 또한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의 실적은 전국 평균 보다는 다소 높지만 해당 그룹내 평균보다 크게 하회하고 있음.

- 이는 서비스 제공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비스 제공범위를 제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 우려됨.

○ 사회서비스 영역은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다차원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군위군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소극적인 사업추진이 우려되는 바, 적극적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됨.

—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는 향후 인구고령화와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내 돌봄기능의 사회화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는 바, 복지서비스 확충의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제안함.

- 특히, 지자체가 전적으로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공급주체를 유인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음.

7. 기초생활보장

□ 종합의견

- 군위군의 기초생활보장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업무기반 확충 영역의 평가결과가 모두 전국 평균, 해당그룹 평균보다 낮음.
 - － 모니터링 참여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기초생활보장 평가영역 중 군위군의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영역인 긴급지원 활성화 실적과 모니터링 참여 실적으로 모니터링 참여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음.
 - － 그러나 모니터링에 대한 참여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 긴급지원 활성화 실적의 경우 우선적으로 긴급지원 실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상황에서 연계실적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이장 및 복지시설의 복지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지원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른 제도와의 연계를 모색해야 함.
- 군위군의 경우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긴급지원 활성화 실적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적극적 발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이 경우 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지역 이장과 복지시설의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8. 자활영역

□ 종합의견

- 군위군의 자활영역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지만, 해당그룹

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군지역의 특성(고령화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부지표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자활영역의 경우 군지역 인프라여건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자활사업 참여자가 다른 군지역에 비해 적고, 자활사업에 성과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자활영역 중 적극적 시장진입형 사업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취업·창업률, 탈수급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 이는 시장진입형 사업에서 다른 상위 자활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탈수급 및 탈빈곤 의지 고취를 위한 상담, 교육, 사례관리 등을 통한 자활사업 수급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군위군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가 많은 상황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자활기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이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함.
 - － 특히, 탈수급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수급자들에 의식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탈수급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9. 의료급여

□ 의료급여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 자격관리 신속처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변동이 접수되면 가능한 빨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빨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함.
 - － 자격처리 신속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격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시·군·구에 신고를 늦게 하거나 전산 상에 자

격오류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발생함.

-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요양비용을 지급할 때 수급권자 자격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보류가 되는 경우.
-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문제가 발생함.
- 회수되지 않은 의료급여증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과 비용 상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수급권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건강보험공단 자격변경을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함.

○ 수급권자 평균 입내원일수와 진료비 증가율은 의료급여 재정안정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진료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지자체 단위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365일 이상 진료자에 대한 관리, 선택병의원대상자 관리, 본인부담제도 관리 및 철저한 자격 관리 등으로 진료비나 입내원일수를 줄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지자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진료비 증가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은 의료이용량이 많은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인 상담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일수를 경감시키기는 노력에 대한 것임.

－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의료이용량이 줄어들면 본 지표이외에도 수급권자 진료비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 의료급여 관리사 채용률은 보건복지부가 사례관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들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였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사를 채용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함.